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47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정성호·천하람·박성준

소병훈 • 이병진 • 복기왕

김문수 · 박희승 · 주철현

안규백 • 이연희 • 윤후덕

최기상 · 채현일 · 임광현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조세지출 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음.

한편,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「지 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94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1조의2에 따른 지방세지출예산서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	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		
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			
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			
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10의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		
	제181조의2에 따른 지방세지		
	출예산서		
11. ~ 16. (생 략)	11. ~ 16. (현행과 같음)		